



제 418회 국회 (정 기 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51호)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가축사육시설 폐쇄·사육제한 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 신설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정희용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9. 20.

다. 회 부 일 : 2024. 9.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육시설의 폐쇄나 사육 제한은 가축의 도축장 출하 등 처분이 곤란한 경우 장기간 행정명령 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행정 처분 완료 후 가축을 재입식 하고 사육하여 출하하기까지의 경영 정상화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농가 손실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가축사육 제한 조치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 소유자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처
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가축사육시설 폐쇄·사육제한 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 신설

개정안은 제1종 전염병에 걸린 가축 등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 등을 위반하여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 사육제한 명령을 받아야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당 명령을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9조의3(과징금 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가축사육 제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치가 가축처분의 곤란¹⁾,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연

현행	개정안
	<u>채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u> <u>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u> <u>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축산업 발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 한다.</u> <u>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 및 사육규모·매출액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²⁾,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아래의 표와 같은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가축의 소유자등³⁾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가축 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가축 사육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1) 문언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는 조문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2) 안 제19조의3제1항에서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과징금의 금액을 사육규모·매출액 등에 따라 정한다는 언급이 없으므로, 안 제19조의3제1항에 후단(예: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가축의 소유자등의 가축사육규모,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조문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3)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함(「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1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폐쇄 명령 등 발령 조건 】

호	의무 규정 ⁵⁾		명령 발령 조건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 오염우려물품 등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	의무 위반
제2호	제5조 제3항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및 예방교육·소독 등 조치 의무	의무를 위반하여 ① 가축전염병을 발생 하게 하였거나 ②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함
제3호	제5조 제5항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시 동물검역신고서 제출 의무	
제4호	제5조 제6항	가축의 소유자·수의사 등이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체류·경유한 후 입국시 입국사실 등의 신고 및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를 의무	
제5호	제11조 제1항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신고 의무	의무 이행 지연
제5호의2	제15조 제1항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록 ·면역요법 또는 투약 명령	3회 이상 의무 위반
제6호	제17조	소독설비·방역시설의 구비 및 소독 실시 의무	의무 위반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3. 제5조제5항에 따른 입국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4.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지연한 자
- 5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자
6.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방역시설의 구비 및 소독 실시 등을 위반한 자

그런데 폐쇄명령 또는 사육 제한명령과 관련해서 ① 가축 처분이 어려운 경우 축산농가가 장기간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⁶⁾ ② 사업 특성상 사육 재개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축산농가에 대한 지나친 제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⁷⁾

이에 개정안은 해당 폐쇄명령 또는 사육 제한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여, 가축방역에 있어 상황에 맞는 유연한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제재가 보다 이행가능성 높은 현실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보임.

과징금은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수단으로,⁸⁾ ① 의무위반 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②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대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개정안의 경우 이중 후자에 해당함.

제재처분 대체 성격의 과징금은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일정한 공익을

-
- 5) 상세 내용은 보고서 마지막의 (참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4항 관련 의무규정)을 참조
- 6) 다만,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제19조제4항의 명령 위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별도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4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사육제한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폐쇄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가축사육시설이 명령을 위반한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2.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7)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명령은 2019년에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4회 위반(제5호의2)에 따른 가축사육제한 명령을 마지막으로, 최근 5년간 발령된 바 없음
- 8) 「행정기본법」 제28조(과징금의 기준)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이를 규정할 경우 “원래의 제재처분을 할 경우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그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과징금의 목적 및 성격을 밝힐 필요가 있는데,⁹⁾ 개정안의 경우 안 제19조의3제1항¹⁰⁾에서 이러한 목적 및 성격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과징금 부과사유 중 “가축처분의 곤란”은 일반적으로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발생하는 불이익한 사정으로서, 제재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유인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행정기본법」 제28조제2항은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① 부과·징수 주체, ② 부과 사유, ③ 상한액, ④ 가산금 징수 사항, ⑤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 사항의 다섯 가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¹¹⁾

개정안은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②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

9)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442.

10) **개정안 제19조의3(과징금 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가축사육 제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치가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1) 「**행정기본법**」 제28조(**과징금의 기준**) ②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1. 부과·징수 주체
2. 부과 사유
3. 상한액
4.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5.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 제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③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④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⑤ 납부기한까지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¹²⁾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한편, 안 제19조의3제4항¹³⁾에서 과징금 수입을 축산업 발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징수한 과징금의 용도를 한정하는 유사 입법례에 따른 것으로 보임. 다만, 징수한 과징금의 사용주체를 「축산법」 제25조의2¹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8조¹⁵⁾의 예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 12) 개정안 제19조의3(과징금 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가축사육 제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치가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13) 개정안 제19조의3(과징금 처분)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축산업 발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14) 「축산법」 제25조의2(과징금 처분)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축산업 발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15) 「폐기물관리법」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 주체가 사용하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징수한 과징금의 용도를 한정하는 입법례 예시 】

입법례	갈음하는 제재처분	과징금 용도
축산법 제25조의2	축산업 영업정지 처분	축산업 발전사업의 용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33조	배출시설 사용중지 처분 및 가축분뇨관련영업 영업정지 처분	환경보전사업의 용도
도시철도법 제38조	도시철도운송사업 사업정지 처분	도시철도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정비 등 용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게임제공업 등 영업정지 처분	건전한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 등 용도
폐기물관리법 제28조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처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용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아있는 가축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축사육 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과징금 납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에 대하여는 입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동의하나,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의 경우 해당 농가에게 영구히 축산업을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에 적용되는 가축사육 제한 조치와 달리 과징금으로 갈음하기 곤란해 보인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27

참 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4항 관련 의무규정

제19조제4항 각호	관련 의무 규정(「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호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u>시장·군수·구청장은</u>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u> 다만,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는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u>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승인신청을 받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1. <u>제1종 가축전염병에</u>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이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u>해당 가축 또는 해당 가축의 사육장소에 함께 있어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오염우려물품”이라 한다)을</u> 격리·억류하거나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제2호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③ 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u>시장·군수·구청장에게</u> <u>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u>를 하여야 하며, <u>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u> 하여야 한다.

제19조제4항 각호	관련 의무 규정(「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호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⑤ <u>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이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등 가축전염병을 옮길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신체·의류·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령 제2조의5(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 시 제출할 서류)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제4호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⑥ <u>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경우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u> 신체·의류·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u>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u>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1.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중 수의·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의2. 가축방역사 4. 동물약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사람 5.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사람 6.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의 종사자 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사람 7의2. 도축장의 종사자 8.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질문·검사·소독 등 조치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9조제4항 각호	관련 의무 규정(「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호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이하 “신고대상 가축”이라 한다)의 소유자등, 신고대상 가축에 대하여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사업자, 신고대상 가축을 진단하거나 검안(檢案)한 수의사, 신고대상 가축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의 농장을 방문한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u>신고대상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u>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지체 없이</u>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에게 <u>신고하여야 한다.</u> 다만, 수의사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이하 “수의사등”이라 한다)에 그 신고대상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의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u>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u> 2. <u>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u>
제5호의2	제15조(검사·주사·약물목록·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u>예방접종 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u>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u>검사·주사·약물목록·면역요법 또는 투약</u> 2. 주사·면역요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주사·면역요법을 <u>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u>(이하 “주사·면역표시”라 한다) 3. <u>주사·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u>

제19조제4항 각호	관련 의무 규정(「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호	제17조(소독설비·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 실시 등)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u>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다만,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분무용 소독장비, 신발소독조 등의 소독설비 및 울타리, 방조망 등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2의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및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3.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4.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또는 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② <u>제1항 각 호의 자(50제곱미터 이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 및 가축,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염원을 소독하고 쥐, 곤충을 없애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여야 한다.</u>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 2.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 3. 그 밖에 전문적인 소독과 방제가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u>그 차량과 탑승자에 대하여 소독을 하여야 한다.</u>